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
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3. 7. 4.

**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
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7. 4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# 1. 개정이유

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3. 5. 16.)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존속기한 삭제(안 제4조의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1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

- 성별영향평가: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2565(2023.6.8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926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5. 30. ~ 2023. 6. 19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
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제4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 법」 제9조에 따라 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#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 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
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 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경제기업과장 한 영 대

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6조의2(지원금의 관리 등)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.

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(出捐)한 것으로 본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